

법정동간행정구역정제변경제획의전요구안

□ 경계변경 필요성

- 한국토지공사 풍암사업단에서 추진중인 광주종합유통업무 설비단지 조성 완료예정일(1999년 12월 31일)이 다가옴에 따라 택지개발로 인해 1필지에 2개의 법정동이 겹치게 되어 건축, 우편물 송달, 재산권행사 등에 있어 초래되는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
- 풍암동 699-6외 23필지를 유통업무 설비단지를 경계로 매월동으로 편입·조정하여 법정동간 경계를 명확히 하고자 함.

□ 추진개요

- 법정동 경계변경대상 : 24필지 52,108㎡
 - 풍암동 699-6외 23필지 ⇒ 매월동
- 지번별 조서
 - 지목별현황 : 답 11필지, 임야 11필지, 전1필지, 천1필지

□ 대상지역 검토결과

- 주민의견 : 지목이 답 및 임야 등으로 주민 비거주지역임
- 행정기관 의견
 - 동장 의견 : 풍암동 699-6외 23필지는 유통업무 설비단지 조성에 따라 같은 단지 내에 2개의 법정동이 존재하게 되어 추후 우편물 송달, 건물신축, 재산권 행사 등에 있어 주민불편 초래 및 행정능률의 저하가 예상되므로 경계변경은 타당하는 의견임.
 - 구 검토의견 : 광주종합유통업무 설비단지의 조성에 따라 1필지가 2개의 법정동(매월동, 풍암동)에 걸쳐 있는 등 불합리한 행정구역으로 인해 향후 재산권 행사 등에 있어 초래될 주민불편과 행정능률의 저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법정동간 경계변경은 타당함.

변경전		변경후		거주 세대수	주민의견(%)		필지수	면적 (㎡)
법정동	행정동	법정동	행정동		찬	반		
풍암동	서창동	매월동	서창동	○ (비거주)			24	52,108

- 향후계획
 - 구 의회의견 수렴후 시에 승인요청
 - 승인후 조례 개정 공포·시행 및 공부정리

□ 검토의견

- 지방자치법 제4조(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변경)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 동간 행정 구역 경계변경계획 의견 요구안으로 광주종합유통업무 설비단지 조성이 2개의 법정동에 걸쳐 개발함에 따라 조성 후 설비단지의 토지이용 및 시설물관리에 불합리하게 됨에 따라 경계를 변경하여 시민들의 건축물 신축, 재산권행사 등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코자 풍암동 699-6외 23필지 52,108㎡를 매월동으로 편입, 경계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.